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
----------	----

2018. 9. 19.(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9월 6일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가. 제안이유

-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 포함 (안 제2조)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신설(안 제5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신설(안 제6조의2)
-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 조정 : 50% → 70%(안 제8조제2항제2호)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2조는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타 법령에 따른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조례 시행으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체 전반에 적용되도록 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안 제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¹⁾ 따라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음.
- 안 제8조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8. 7. 31.~'18.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1)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 마. <생략>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생략>

시킴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 50퍼센트에 따른 현황과 70퍼센트로 상향조정시 지역건설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예측자료)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을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실태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현행 제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역중소건설산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현행 제3호) 중 “시공비율”을 “시행비율”로 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른 분할 또는 분리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제7조를 제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u>지역건설산업</u>”이라 함은 「<u>건설산업기본법</u>」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수행 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p> <p>제3조(도의 책무)</p> <p>① ~ 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다른 <u>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p> <p>1. “<u>지역건설산업</u>”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u>건설산업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u> ----- ----- ----- -----.</p> <p><u>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u></p>

현행	개정안
	<p><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u> <u>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실태에 관한 사항</u> <u>3. 하도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5조(분할발주 등) (생략)</p> <p><u><신설></u></p>	<p>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p> <p><u>제6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u></p> <p><u>도지사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u> <u>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p>제6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p>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p>관한 사항은 「<u>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u>」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u>법 시행령 제34조</u>----- -----.</p>
<p>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u>지역중소건설업체</u>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p> <p>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u>50퍼센트</u> 이상</p> <p><u><신설></u></p> <p>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u>시공비율</u>의 확대</p> <p><u><신설></u></p>	<p>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지역중소건설업체</u>----- -----</p> <p>2.----- ----- <u>70퍼센트</u> -----</p> <p>3. <u>제6조제1항에 따른 분할 또는 분리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u></p> <p>4.----- ----- <u>시행비율</u>-----</p> <p>③ <u>발주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생략)</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조의2 (현행 제7조와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6.1., 2013.3.23.>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

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6.2.3.>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1.5.2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